

「평창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8. 29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9. 24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9. 24(월)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)

-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를 사전 방지하고 민원 편의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
- 무인민원발급기, 주민등록관리시스템,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전자수입증지를 도입 사용토록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과 비리를 방지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 신설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종이수입증지 외에 무인민원발급기, 주민등록관리시스템,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
  -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발행과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수입증지 사용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부 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